

세무와회계저널
제6권 제4호 2005년 12월 pp.263~279
한국세무학회

전자어음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조세지원제도를 중심으로 —

한영희**

〈요 약〉

종이어음의 결제는 여러 가지 복잡하고 비경제적인 과정을 통하여 유통되었던 까닭에, 전자결제수단의 일환으로서 전자문서를 기반으로 한 전자어음의 제도적 도입은 시대적 요구에 따라 긴요한 상황이었다. 이 같은 환경 하에서 2005년 1월 1일 발효된 「전자어음발행및유통에 관한 법률」인 전자어음법은 유가증권의 전자화 시각에서 기업 간 결제에 혁신적인 편리성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기반으로 평가되고 있다.

종이어음은 기업 간 지급결제의 대표적인 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기업의 자금유통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지급수단으로서 널리 이용되어 왔으나, 그때마다 그 발행·유통에 따른 관리비용, 어음부도에 따른 기업 도산의 문제, 위·변조의 문제 등 어음본래의 구조적 취약점이 문제시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어음제도에 대하여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기존 종이어음의 폐해를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써 전자어음의 필요성과 법적 요건을 살펴보고, 전자어음의 특질 및 운영체계를 토대로 전자어음의 활성화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의 세액공제의 범위를 전자어음까지 포함시키는 조세지원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전자결제시스템, 전자어음, 전자어음법, 조세지원

* 이 논문은 2005년도 남서울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서 연구되었음.

** 남서울대학교 경영세무학부 조교수

I. 서 론

유가증권(securities ; Wertpapier)은 무형의 재산권 내지 재산적 법률관계를 유형화(tangibility)하여 그 유통성(negotiability)을 증진시키기 위해 창출된 법기술상의 제도라 설명된다. 그런데 이 경우 수단적 매개로서 유형의 증권이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시스템'(information processing system : IPS)에 의하여 전자화 되는 경우에는 마땅히 증권의 매개수단 또한 전자문서에 의해 대체되는데, 이를 일컬어 소위 '유가증권의 전자화'라 한다.

유형의 증권으로서 실물어음(이하 '종이어음'이라 한다), 곧 종이어음은 기업 간 자금유통을 손쉽게 하고, 상거래를 촉진하는 동시에,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게는 매우 유효한 단기자금조달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어음의 발행·유통·관리에 따른 소요비용의 문제, 부도에 따른 기업도산의 문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위·변조의 문제 등은 생래적인 종이어음의 역기능으로 지적되어 왔다. 요컨대 전자어음은 이 같은 역기능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구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온라인상으로 발행·유통됨으로써 어음교환에 소요되는 부대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고, 인증된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기 때문에 종이어음에 비하여 위·변조의 피해를 줄일 수 있으며, 어음부도 또한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모든 거래가 실명으로 이루어져 조세징의를 실현할 수 있어 이로부터 기업의 조세투명성과 회계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이 순기능으로 요약된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위와 같은 전자어음의 순기능적 효용을 제고하기 위한 선결요건으로서 고려할 수 있는 사실은 어음발행 과정에서 상거래 명세의 노출에 따른 반사적 이해가 부여되어야 하며, 상거래 당사자들이 안전하고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정보통신망이 선결되어야 한다. 또한 실질적으로 종이어음을 대체함에 따른 기업의 역기능을 감수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제도가 수반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종이어음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으로써 전자어음의 의의와 법적 요건을 살펴보고, 2005년 1월 1일 발효된 「전자어음발행및유통에관한법률」(이하 '전자어음법'이라 한다)¹⁾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는 전자어음의 특질 및 운영체계를 토대로 전자어음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과제으로써 조세지원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법률 제7197호(2004. 3. 22 공포, 2005. 1. 1일부 시행).

II. 전자어음제도의 이론적 고찰

1. 주요국 법적 배경

가. 미 국

미국에서는 상업증권(commercial securities)으로써 약속어음(promissory note)과 환어음(bill of exchange)이 있는데 약속어음은 우리나라 같이 진성어음이 아니고 중·단기 투자증권으로 이용되어 순수하게 투자증권으로만 발전하여 오고 있다. 그리고 환어음은 우리나라와 같이 은행의 수표로서의 기능으로 자리매김해 오고 있다.

법적 배경에 있어서는 전자금융거래법(Electronic Fund Transfer Act : EFTA)과 국내·외상거래에 관한 전자서명법(Electronic Signature in Global and National Commerce Act : E-SIGN)에서 양도가능한 기록(transferable record)의 전자적 이전(electronic delivery of disclosures)이라는 개념을 설정하여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 유가증권, 곧 어음·수표 등을 현실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갈음하여 수표의 영상이나 수표 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달함으로써 지급제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수표의 전자적 교환도 가능하게 하였다.²⁾

최근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자금이체의 지급제시가 이루어지는 미국 인터넷 빌링인 전자청구·지불제도(Electronic Bill Payment and Presentment ; EBPP)도 운용되고 있다.³⁾

나. 일 본

일본에서는 상거래의 결제수단으로 어음 및 현금이 주로 이용되고 있는데, 제조업 중 종업원 20인 이하 영세기업에 대해서는 공정취인위원회가 하청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은 높지 않다고 한다.

이러한 공정취인위원회 연차보고에 의하면 기업의 판매대금중 어음결제비중은 대규모 투자와 고성장이 실현되었던 1950~1960년대에는 재무구조의 취약성으로 인해 60~70%에 달했지만, 그후 안정성장기로 접어들면서 꾸준히 하락하여 1997년에는 40%에 이르고 있다. 현재 진성어음의 경우 담보력 유무를 불문하고 거의 전액이 할인되고 있고, 신용조사 기업의 발달로 팩토링이 활성화되어 어음제도를 대체해 가고 있는 실정이다.⁴⁾

한편 일본에서는 전국에 있는 어음교환소를 하나의 전자어음교환소로 통합하여 종래 어음과 수표

2) Lee S. Adams & David J. Martz, Developments in Cyberbanking, The Business Lawyer Vol.57(November 2001) pp.1267~1268.

3) Ann H. Spiotto, Electronic Bill Payment and Presentment : A Primer, The Business Lawyer Vol.57(November 2001) pp.447~454.

4) 서헌제, “어음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상사법연구 제20권 제3호, 2001, pp.160~161.

에 대하여 종이어음을 교환하는 어음교환소의 어음교환업무로부터 전자화 하는 전자교환방식이 추진되고 있다. 전자어음교환소가 추심은행으로부터 어음과 수표에 관한 전자적 정보를 수신하여 지급 은행에 전송하고 그 결제차액 등의 각종 정보를 관리함으로써 실물교환의 비용과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⁵⁾

다. 독 일

독일에서는 20세기 중반까지 어음이 대금결제의 주종을 이루었으나, 재무구조의 개선과 신용사회의 정착으로 어음결제 비용이 축소되어 최근에는 10%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다고 한다.⁶⁾

정책적 기반 차원에서는 1985년에 독일연방은행을 중심으로 전 금융기관이 ‘무증권수표추심절차협정’을 체결하여 일정한 금액 이하의 수표에 대하여는 전자적 방법으로 추심하도록 하였고, 1998년에는 이를 ‘수표추심에 관한 협정’으로 통합하여 전자정보에 의하여 수표를 추할 수 있도록 하였다.

라. 프랑스

프랑스는 유럽국가 중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한 어음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가이다. 일반적인 기업간 결제수단은 어음이며, 어음보험제도가 발달되어 기업간 거래의 80% 이상을 어음결제로 처리하고 있다.

한편 현금에 의한 결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수표에 의한 결제비중은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어음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대금지급을 지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992년 12월에는 지불지연에 대한 벌금형을 부과하는 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다.⁷⁾

프랑스에서도 수표실물에 관한 정보를 전자화하여 이를 교환함으로써 결제하는 자기수표가 이용되고 있으며, 약속어음과 환어음의 경우도 실물증권 없이 발행인이 지급지시가 있으면 발행인의 계좌에서 자동적으로 결제되는 실물증권 없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제시스템이 이용되고 있다.

마. 우리나라

어음제도의 기초가 되고 있는 현행 어음법은 1962년 법률 제1001호로 제정된 이후 1995년 서명방식을 추가하는 한차례 개정을 거친 이래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어음은 국제적으로 유통되므로 각국의 어음법을 통일할 필요성을 일찍부터 제기되어 왔다. 이리하여 1934년 제네바통일어음조약이 체결되었으며, 우리나라의 어음법은 이 조약을 번역한 것이다.⁸⁾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사회, 경제, 문화 전반에 걸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

5) 정쾌영, “어음과 수표의 전자화에 관한 고찰”, 대한경영학회지 제16권 제7호, 2003.12, p.2549.

6) 김준경, “어음의 경제적 기능과 제도개혁방안”, 한국개발연구원 1998.12, p.41.

7) 서헌제, 상계논문, p.160.

8) 서헌제, 어음수표법(제2판), 법문사, 2000, pp.70~72.

며, 일상생활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기존 오프라인 업무에서 이루어졌던 거래대금 결제에 널리 이용되었던 주요한 수단은 어음과 수표이다.⁹⁾

물론 어음의 남발과 어음결제기간의 장기화 등의 어음제도 남용 사례가 적지 않았고, IMF 경제위기에 어음의 부도가 급증되면서 중소기업의 자금난 심화 및 연쇄부도 등의 파행성이 적지 않았다. 이로 인해 어음제도의 폐지론이 부각되었으나, 각종 어음의 대체결제수단이 개발되어 실무에 적용되고 있다. 개발된 어음대체결제수단이 기존 종이문서의 어음제도와 크게 다르지 않았고, 실시간의 신용정보 등을 파악할 수 없는 한계점으로 인해 그 효과가 미비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에 종이문서 중심의 업무를 ATM,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전자우편, 전자무역, 전자세금계산서 등 전자거래로 대체 시키고자 하는 결제수단이 요구되기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추세와 더불어 종이 기반의 유가증권인 어음·수표를 전자화 하여 지급결제수단으로 활용하자는 논의가 미국, 일본에 이어서 국내에서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전자거래의 일환으로 전자어음¹⁰⁾은 2001년 11월 전자어음법이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되면서 법률 제정 여부를 놓고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왔다. 그 이후 2004년 3월 동 법안이 국회에서 전격적으로 통과되어 정식 법률로 공포되었고, 2004년 12월 시행령이 확정되어, 2005년 1월 1일 금융결제원이 전자어음관리기관으로 선정됨으로써 법률이 발효 되었다. 단, 현행의 운영시스템 구축 및 보완 등 제반 환경여건을 구비하여 2005년 7월 1일부터 발행·유통되어야 했다. 그러나 각 금융기관의 시스템 정비 차이로 일부 시스템이 구비된 금융기관¹¹⁾을 중심으로 2005년 9월 27일부터 발행·유통되고 있다.

2. 전자어음의 활성화 배경 및 현황

1997년 IMF의 시기적 상황에 편승하여 약속어음이 중소기업의 금융부담과 채산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일 뿐만 아니라 건전한 금융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는 핵심 요체로서 인식되어, 실물경제상 어음의 유통에 따른 기업환경 및 요인¹²⁾ 등의 충분한 검토가 전제되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음제도 폐지를 근간으로 한 입법안이 상정되기도 하였다.

-
- 9) 어음은 신용창조기능과 신용담보기능 및 투자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한다. 어음은 경제적 기능에 따라 기업 간 실제적인 상거래와 관련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발행하는 어음을 일반적으로 상업어음 또는 진성어음이라고 하고, 실거래에 바탕을 두지 않고 타인의 자금유통의 목적으로 발행한 어음을 융통어음이라고 한다. 할인어음은 할인료를 공제하고 금융기관이 어음을 매수하는 것이고, 담보어음은 은행이 차주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보증인으로부터 어음을 수수하는 것이다.
 - 10) 전자어음법에 기할 경우 전자어음은 전통적 서면에 기초한 종이어음과는 달리 전자문서의 형태로 작성되고, 전자어음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의해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되어진 약속어음을 말한다.
 - 11) 기업은행, 국민은행, 농협, 우리은행, 조흥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등 8개 은행.
 - 12) ① 기업의 만성적 자금부족 현상 및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약속어음제도의 남용 문제, ② 어음제도의 폐지에 따른 상거래의 위축 문제, ③ 신용이 대출수요로 전환되어 재무구조의 비구조화 촉진문제 등을 예시할 수 있다. 법제사법위원회, “어음법중개정법률안검토보고”, 1998. 12.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5년 상반기 우리나라 및 주요국의 지급결제 통계”에 따르면 일반고객이 금융기관을 통해 거래하는 결제규모는 2004년말 하루 평균 1,361만건에 거래금액 135조 8,550억원으로 2003년의 같은 기간에 비하여 건수는 1.2%감소하였으나, 금액은 8.7%증가하였다.

〈표 1〉 어음·수표의 결제현황

(단위 : 조원)

년도	수 표		약속어음		기 타		합 계
	금 액	비율(%)	금 액	비율(%)	금 액	비율(%)	
1998	3,570.3	47.5	3,557.4	47.4	378.1	5.1	7,505.8
1999	4,242.4	43.8	4,973.5	51.4	461.4	4.8	9,677.3
2000	3,200.7	47.1	3,209.7	47.3	380.6	5.6	6,791.0
2001	2,789.5	48.0	2,383.1	41.0	637.2	11.0	5,809.8
2002	2,956.4	49.9	2,430.0	40.9	542.9	9.2	5,929.3
2003	2,649.9	50.7	1,971.0	37.7	602.7	11.6	5,223.6
2004	2,114.6	57.1	1,230.2	33.2	355.5	9.3	3,700.3

<자료> www.bok.or.kr 지급결제동향,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2005.9.6.

<표 1> 한국은행 발표 자료에 의하면 이 가운데 어음·수표의 교환규모는 2003년의 같은 기간에 비해 건수로는 11.3%, 금액으로는 8.1% 각각 감소했으나, 실제 규모에 있어서는 2004년말 하루 평균 348.9만건 14조 8,010억원에 달해 각각 11.4%와 28.6%가 전년대비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결제수단으로써 어음과 수표의 이용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¹³⁾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음교환을 통한 결제방식은 구조적으로 결제리스크의 발생가능성을 높이고, 어음의 발행·유통을 위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등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던 까닭에, 그간 어음 교환규모를 축소하거나 지급결제제도를 선진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후 과도기적 상황에서 종이어음을 대신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 후술하는 바와 같이 구매전용카드¹⁴⁾, 구매자금대출제도¹⁵⁾, 전자적 방식에 의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¹⁶⁾, 전자외상매출채

13) <http://www.bok.or.kr> “우리나라 및 주요국의 지급결제 통계”,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2005.5.

2002년 4054.4만건, 21조 8,800억원, 2003년 393.9만건, 21조 630억원

14) 기업 간 물품구매를 위한 일종의 신용카드로 구매기업은 이를 이용하여 물품구매를 한 후, 지정결제일에 결제하고 판매기업은 카드발행은행에 매출전표를 매입 의뢰하여 판매대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는 결제 수단으로 1999년 11월 도입되었다.

15) 납품업체가 주도적으로 물품대금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납품업체가 물품을 납품한 후, 구매기업을 지급인으로 하고 납품대금을 지급금액으로 하는 환어음을 발행하여 거래은행에 추심을 의뢰하고 구매기업은 거래은행을 통하여 통보받은 환어음의 지급결제 시, 거래은행과 사전에 약정한 대출한도 범위 내에서 기업 구매자금을 융자받아 구매대금을 결제하는 수단이다.

16) 납품업체가 거래은행으로부터 외상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납품대금을 조기에 현금으로 회수하고

권¹⁷⁾ 등 새로운 금융상품이 개발되어 어음에 의한 외상거래를 은행대출에 의한 현금결제방법으로 대체하는 제도가 시행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 성과가 미약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따라서 기존 종이어음의 대체수단으로써 전자어음은 인터넷에서 발행하여 전자어음관리기관의 공중 아래 유통되기 때문에 어음의 위·변조가 원천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금융결제원이 적발한 위조어음은 4,000여장으로 액면가 기준으로 수천억 원대에 이른다. 전자어음이 도입되면 모든 거래가 실명으로 실시간에 이뤄져 세금탈루를 막고 회계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어음이나 수표는 모든 권리를 표창하는 증서로서 그 재료에 관하여는 제한이 없으며 소지와 이전이 용이한 것이라면 어떤 것이라도 무방하나, 일반적으로 종이문서가 이용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어음법 제1조와 수표법 제1조의 어음과 수표의 재료가 종이문서일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물론 어음·수표 증서는 반드시 일정한 규격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각 어음행위와 수표행위도 그 행위자가 어음법과 수표법에서 규정하는 법정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방식에 의한다.

따라서 어음과 수표가 전자적 방법으로 이용되기 위해서는 먼저 어음 또는 수표의 증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지 않으면 안된다. 이에 관하여 전자거래기본법은 제2조 제1호에서 '정보처리 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전자문서로 정의하고, 이 전자문서의 효력에 관하여 제4조에서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송신·수신 또는 저장되는 전자문서도 법률에 따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일반적인 종이문서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일정기간 후, 구매기업이 이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는 방식의 상거래대금 결제제도이다.

- 17) 구매기업이 거래은행 인터넷 뱅킹을 통해 판매자를 채권자로 지정, 전자증서인 전자채권을 발행하여 구매대금을 지급하면 판매기업은 동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거나, 만기 전에 이를 담보로 거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현금화 할 수 있는 지급결제수단이다. 동 채권은 은행의 보증여부에 따라 보증·무보증 채권으로 구분된다. 발행기업별 발행한도가 구매기업 거래은행에 의해 등록·관리되므로 발행이 남용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으며, 만기일 또한 180일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 기간 장기화로 인한 결제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제3자에 대한 양도가 불가능하지만, 동 채권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하므로 만기 전 현금화가 가능하다. 전자어음과 가장 유사한 형태로 2002년 3월부터 기업 간 전자상거래 지급결제수단으로 도입되었다.

Ⅲ. 전자어음의 특징 및 운영체계

1. 전자어음의 특징

가. 전자어음의 의의

전자어음법에 기할 경우 전자어음(electronic promissory note)¹⁸⁾은 전통적 서면에 기초한 종이어음과는 달리 전자문서의 형태로 작성되고, 전자어음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의해 전자어음관리기관¹⁹⁾에 등록되어진 약속어음을 말한다.²⁰⁾

전자어음은 그 형태가 전자문서로서 존재하여 그 작성, 이전, 권리행사 등이 소위 온라인에서 행사된다고 하는 점 외에는 종이어음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보유한다.

어음 무권화의 실체로서 전자어음의 도입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첫째, 종이어음의 발행, 유통, 관리 등에 따르는 경제적 손실을 절감할 수 있고, 둘째, 기업의 조세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셋째, 정보통신망을 통한 어음거래의 활성화 및 신속·민활한 상거래 환경을 지향할 수 있다는 점을 예시할 수 있다.²¹⁾

〈표 2〉 전자어음법상 전자어음과 종이어음 비교²²⁾

구 분	종이어음	전자어음	전자어음법
형 태	종이문서	전자문서	제2조, 제2항
종 류	약속어음 및 환어음	약속어음	
발행(등록)	제한없음	전자어음관리기관	제5조, 제1항
발행(금액)		제한가능	제5조, 제2항
발행·배서방법	기명날인(또는 서명)	전자서명	제6조, 제3항
배서제한	제한없음	제한(총 20회)	제7조, 제5항
만기제한		발행일로부터 1년	제6조, 제5항
백지어음	발행가능	발행불가	제6조, 제6항
상환·일부지급	적용가능	적용불가	제11조

18) 전자어음법, 제2조 제2항, 제5조 제1항.

19) 전자어음관리기관의 감독 및 검사, 지정요건 및 절차, 안전성 확보기준 등에 대해서는 전자어음법, 제20조, 제21조; 동 법 시행령(이하 전자어음시행령), 제3조, 제4조, 제12조, 제18조 등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20) ① UNCITRAL : UNCITRAL 모델법, Article 2.

21) 권종호, “전자어음제도의 도입과 법리적 과제”, 『비교사법』, 제10권, 제1호(통권20호), 2003, pp.559~563.

22) 한영희, 심종석, “유가증권 전자화에 관한 고찰”, 한국경영교육학회, 2005년 4월 춘계학술논문발표집 도표 및 내용 일부인용.

다만, 전자어음은 그 존재형태가 전자문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까닭에, 전자어음법에 기하여 종이어음과 전술 경우 몇 가지 법적 제한요건이 부가되고 있는데, 이를 종이어음과 전자어음을 비교 도식화하면 <표 2>과 같다.

나. 전자어음의 법적 배경 : 전자어음법의 개관

전자어음법은 전자적 방식으로 약속어음을 발행·유통하여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조세투명성을 제고하고, 종이어음의 발행 및 관리에 따르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등 신속·민활한 기업 간 지급결제수단으로 전자어음을 활성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어음법 제1조). 총 24개 조문으로 구성된 동 법의 주요 골자를 개략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어음법에서는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전자문서(제2조, 제1항), 공인전자서명(제2조, 제3항), 공인인증서(제2조, 제5항) 등 전자어음은 전자문서에 의한 약속어음에 한정하고 있다(제2조, 제2항).

둘째, 전자어음의 발행과 관련하여 동 법은 어음법에서 정하고 있는 어음요건²³⁾을 포함하여 전자어음의 지급을 청구할 금융기관²⁴⁾, 전자어음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정보로써 사업자고유정보를 기재하여야 한다. 사업자고유정보로써 절대적 기재사항은 전자어음과 관련된 당사자의 상호나 사업자등록번호, 회원번호,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 사업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제2조, 제6항).

셋째, 현행 어음법에서는 어음의 배서와 만기에 있어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나, 전자어음의 경우에는 각각 20회(제7조, 제5항)와 1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차이점이 있다(제6조, 제4항 제5호).

넷째, 어음의 상환과 일부지급의 영수와 관련, 현행 어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상환증권성과 일부지급은 전자어음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어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제11조), 또한 종이어음은 백지어음이 가능하나 전자어음은 백지어음을 발행할 수 없다. (제6조 제4항 제6호)

다섯째,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시스템을 통한 전자문서[전자어음]의 송·수신에는 그 안전성 보장이 필수적인 바, 이를 위해 동 법에서는 그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곧 전자어음관리기관은 전자어음에 관한 상거래 안전을 확보하고 지급의 확실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전자적 전송·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기준을 마련하고 동 법 시행령에 이를 위임해 두고 있다.²⁵⁾

23) 당해 요건에는 증권 본문 중에 그 증권의 작성에 사용하는 국어로 약속어음임을 표시하는 문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뜻의 무조건의 약속, 만기표시, 지급지, 지급을 받을 자 또는 지급을 받을 자를 지시할 자의 명칭, 발행일과 발행지,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등이 포함된다. 다만 지급지에 있어서는 전자어음의 경우 전자어음관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지시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까닭에, 현행 어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대적 기재사항으로서 지급지의 규율범위와는 그 범위가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24) 이 경우 금융기관은 은행법(제2조, 제2항)에 의한 금융기관 및 이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25) 전자어음법시행령, 제3조(전자어음관리기관의 지정요건), 제4조(관리기관의 지정절차), 제7조(정보처리조직의 관리), 제12조(관리기관의 안전성 확보기준), 제18조(관리기관의 감독 및 검사) 등의 조문이 이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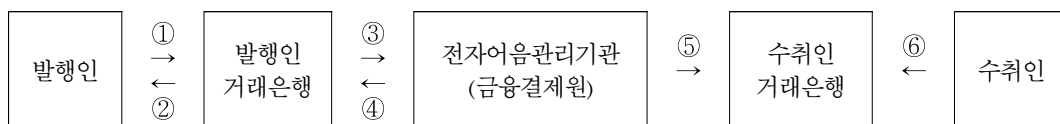
한편 전자어음법은 제2조 제2항에서 전자어음을 약속어음에만 한정하고 있다. 이처럼 그 대상을 약속어음에만 한정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주장하는 바에 따라 기업의 요구가 약속어음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 수표의 경우 자기앞수표는 부분적으로나마 기 전자화 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점, 환어음의 경우에는 국제상거래에 특정된 특수성이 있다는 점 등으로 설명되고 있다.²⁶⁾ 다만 전자어음에 준한 전자수표의 상용화를 고려할 때, 현행 실물수표의 무권화에 대한 법적 고려가 배제되어 있다는 사실은 모를지기 입법적 흠결이라고 판단된다.

2. 전자어음의 운영체계

가. 전자어음의 발행

전자어음은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작성되어 등록, 발행, 배서, 지급된다. 발행인의 전자어음 발행과정은 <표 3> 전자어음의 발행 절차와 같이 우선 금융기관(거래은행)과 전자어음당좌예금약정을 체결하고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는다. 약정을 체결한 거래은행은 당해 내역을 전자어음관리기관에 전송하고 발행인 등록절차를 거친 후 공인인증서에 의해 전자어음을 발행한다. 이 경우 발행인이 당좌예금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이거나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 중에 있는 때에는 발행인 등록이 거부된다.

<표 3> 전자어음의 발행



①,② 당좌·이용약정체결 ③ 발행요청내용전송 ④,⑤ 발행통지 ⑥ 이용약정체결/조회/발행요청

등록 시 전자어음관리기관은 전자어음법 규정에 의거 당해 전자어음의 지급을 청구할 금융기관이나 신용조사기관 등의 의견을 참고하여 전자어음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전자어음의 연간 총 발행금액 등을 제한할 수 있다(제5조, 제2항). 전자어음에는 어음법에서 규정한 종이어음상의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전자어음의 지급을 청구할 금융기관과 전자어음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정보 및 사업자고유정보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제6조, 제1항).

나. 전자어음의 결제

발행인·소지인의 전자어음 결제과정은 <표 4>²⁷⁾ 전자어음의 결제 절차와 같이 전자어음의 소지인이 전자어음의 배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첨부하여 지급청구 뜻이 기재된 전자문서를 금융기관에 송

26) 권중호, 전계논문, p.5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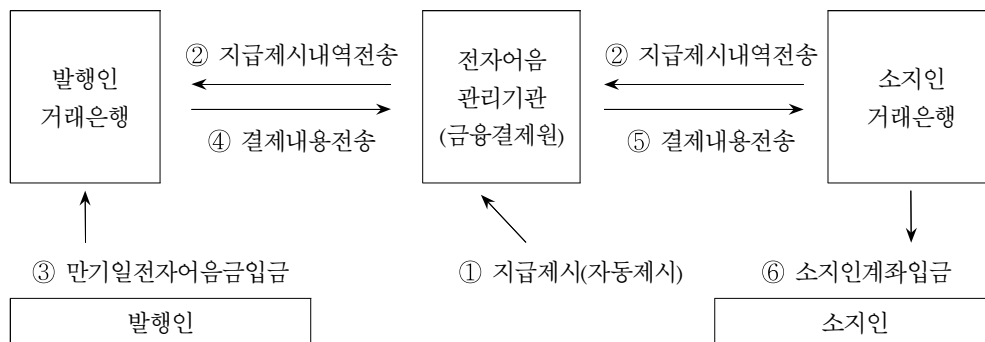
27) 한영희, 심종석, “전계발표논문”, 한국경영교육학회, 2005년 4월 춘계학술논문발표집 도표 및 내용 일부인용.

신하고 당해 금융기관이 이를 수신한 때에는 어음법(제3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지급지시가 행사된다. 다만 이 경우 전자어음관리기관이 운영하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지급제시가 가능하다(제9조, 제1항).

전자어음의 지급제시를 위한 송·수신의 시기는 기본적으로 그 대리인이 당해 전자문서를 수신할 수 있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때에 송신된 것으로 보며,²⁸⁾ 지급제시를 행사한 소지인은 지급청구의 뜻이 기재된 전자문서에 어음대금을 수령할 금융기관 계좌를 기재하여야 한다(제9조, 제3항).

전자어음의 소지인에 의하여 지급제시를 받은 금융기관이 어음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전자어음관리기관에 지급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는데, 다만 전자어음관리기관에서 운영하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지급이 완료된 경우에는 당해 통지가 불필요하다.

〈표 4〉 전자어음의 결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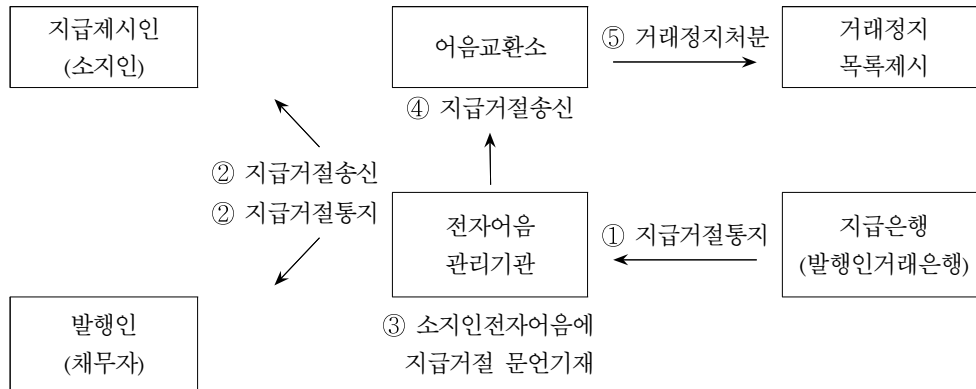
어음대금 지급이 완료된 경우에는 어음채무자가 당해 어음을 환수한 것으로 보며, 일부상환과 일부지급이 전자어음법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볼 때, 어음상환과 일부지급에 대한 어음법(제39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당해 규정은 전자어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제11조).

다. 전자어음의 지급거절

지급제시를 받은 금융기관의 지급거절절차는 <표 5>와 같이 그 사실이 전자문서에 의하여 통지되어야 한다. 이 경우 금융기관은 지급거절 전자문서를 전자어음관리기관에 통보하고 이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당해 전자문서를 공정증서로 보며(어음법, 제44조, 제1항., 전자어음법, 제12조, 제2항), 작성일은 전자문서를 수신한 때가 된다. 한편 전자어음의 소지인이 소구를 행사할 경우에는 전자어음과 배서사실이 기재된 전자문서 및 지급거절 전자문서와 함께 소구의 뜻을 기재한 전자문서를 첨부하여 소구의 무자에게 송신하여야 한다. 소구의무자가 소구금액을 지급한 때에는 전자어음관리기관에 지급사실을 통지해야 하는데, 당해 통지는 소구의무자가 전자어음을 환수한 것으로 간주된다(제13조).

28) 전자거래기본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

〈표 5〉 전자어음의 지급거절



IV. 전자어음의 조세지원제도

본 연구에서 제시한 문제점을 토대로 전자어음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기존 종이어음제도의 대안으로서 뿐만 아니라 전자어음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유인책으로서 세액공제 폭을 현행 적용기준 0.3%²⁹⁾ 이상으로 늘리는 것이다. 이를테면 약속어음 발행금액 중 종이어음이 아닌 전자어음 발행금액에 대하여 과세표준 산정시 적용기준의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세액공제의 폭을 적정화하여야 한다. 기존에는 결제대금의 0.3%의 세액공제혜택을 주고 있지만, 전자어음의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의 측면에서 축소개정 이전이 0.5%로 공제혜택을 상향조정 해주는 것이다. 물론 외견상 세수감소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세원확대에 따른 세수증가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전자어음의 활성화가 가져올 경제에 미칠 순기능적 효과를 유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실질적인 조세지원제도가 수반되지 않고서는 전자어음제도는 또 다시 기존의 과도기적 제도의 결제수단처럼 조기정착이 요원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둘째,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전자어음 발행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대상으로 적용되지 않으나, 전자어음 발행액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전자어음의 활성화와 조기정착이 가시화될 것으로 생각한다.³⁰⁾

29)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

2002년 12월 11일 본 조항 개정 이전에는 결제금액의 0.5% 이었으나, 다른 결제수단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공제율을 0.5%에서 0.3%로 축소적용 및 200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적용

30)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

내국인이 구매대금(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구매대금에 한한다)을 환어음 등으로 지급하거나 기업구매전용카드 등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의 규정을 다음과 같은 개정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세액공제[MIN(①,②)]은 ①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환어음의 금액 + 판매대금추심외서의 금액 + 기업구매전용카드의 사용금액 +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의 이용금액 + 구매론 또는 네트워크론 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 + 전자어음 제도를 이용한 지급한 금액) -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약속어음의 금액)] $\times$ 0.5%(대금결제시기가 30일 이내 분으로 하되 30일 초과 60일 이내 분 0.25%) ② 당해 과세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times$ 12%로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의 규정을 연장적용 뿐만 아니라 전자어음을 포함한 세액공제혜택을 포함하는 법률적 변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기존의 세액공제 범위에 전자어음 발행결제금액을 포함함으로써 실질적인 조세지원혜택이 부여됨으로써 전자어음의 활성화 및 조기정착이 이루어진다.

나아가 법률화된 전자어음 발행 및 유통이 어느 정도 조기 정착된 후에는 전자어음 이외의 대금결제 수단에 대하여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써 기업간 대금결제수단은 오로지 전자어음 결제수단으로 발행·유통될 때로 한정하여 세액공제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전자어음 발행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무차별 선정 세무조사 대상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것이다. 본 제도를 선택하는 업체는 절세효과가 담보된 경우 자연히 정책에 동참함과 동시에 세원이 노출되는 것을 기꺼이 감수할 것이다. 따라서 기존 결제제도의 병폐를 제거하겠다는 의지표명과 정책에 기꺼이 동참한 것이기에 최소한 세원의 탈루를 바로 잡겠다는 제도인 세무조사를 일정기간 면제 해줌으로써 전자어음제도의 조기정착에 기여할 것이다.

넷째, 종이어음을 대체하는 전자어음은 상거래의 위축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전자어음발행요건을 점진적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즉 시행초기부터 발행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발행요건을 동일하게 두어 전자어음과 종이어음의 수요와 공급을 시장의 자율적인 선택에 맡기는 것이 경제의 왜곡을 줄이면서 본래의 전자어음의 발행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종이어음 등록 후, 전자어음 발행은 기업에 전적으로 선택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즉 일정기간 종이어음 발행요건만 충족되어 등록된 후에는 전자어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초기의 전자어음의 발행은 종이어음의 발행과 병행함으로써, 전자어음법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는 발행요건을 기존 종이어음과 동일하게 함과 동시에 조세지원의 혜택을 실질적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그럼으로써 종이어음의 발행 보다는 전자어음 발행이 기업의 신용 및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시장의 원리에 의해 전자어음을 발행하지 않는 기업은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됨으로써 상거래 위축의 문제점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액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세액공제=MIN(①,②)

①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환어음의 금액+판매대금추심외서의 금액+기업구매전용카드의 사용금액+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의 이용금액+구매론 또는 네트워크론제도를 이용하여 지급한 금액) - 구매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결제한 “약속어음의 금액”] $\times$ 0.3%(대금결제시기가 30일 이내분으로 하되 30일 초과 60일 이내분 0.15%)

② 한도액 : 당해 과세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times$ 10%

V. 요약 및 결론

기업 간 상거래에 있어 대금지급은 종전에는 실물거래에 있어서의 결제수단은 어음·수표가 근간을 이루고 있었으나, 오늘날은 정보통신망을 연계하여 다양한 전자결제시스템 일환으로써 전자어음의 제도적 도입은 긴요한 상황이었다.

현행 종이어음은 기업 간 지급결제의 대표적인 수단으로써 뿐만 아니라 기업의 자금유통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지급수단으로서 널리 이용되어 왔으나, 그 발행·유통에 따른 관리비용, 어음부도에 따른 기업 도산의 문제, 위·변조의 문제 등 어음본래 구조적 취약점이 문제시 되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새로운 결제시스템으로서 전자어음은 이상과 같은 취약점을 상당 부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발행·유통됨으로써 어음의 발행·유통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고, 종이어음에 비하여 위·변조의 폐해를 방지하여 이로부터 어음부도 또한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하는 장점을 수반한다. 이는 모든 거래가 실명으로 이뤄져 조세정의를 실현할 수 있고,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순기능적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이같은 순기능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전자어음 시행에 따른 유통성의 문제점과 상거래위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전자어음 활성화를 위해 조세지원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기존의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제도에서의 세액공제 폭을 늘리도록 세율을 일정비율 상향 조정시키는 것이다.

둘째,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전자어음 발행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대상으로 적용되지 않으나, 전자어음 발행금액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세액공제 대상의 폭을 확대시키는 것이다. 또한 전자어음 발행 및 유통이 어느 정도 조기 정착된 후에는 전자어음 이외의 대금결제 수단에 대하여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점차적으로 제외시켜 기업간 신용 대금결제수단은 오로지 전자어음으로만 발행·유통 될 때 세액공제혜택이 부여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전자어음 제도를 채택하여 활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것이다.

넷째, 종이어음을 대체하는 전자어음은 상거래의 위축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전자어음발행요건을 점진적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요컨대 전자어음은 어음 무권화의 실체로서 종이어음의 발행·유통·관리 등에 따르는 경제적 손실을 절감할 수 있고, 기업의 조세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어음거래의 활성화를 통해 신속·민활한 상거래 환경을 지향할 수 있다는 장점을 부각한다. 다만 이상과 같은 예견 가능한 문제점 또는 시사점을 고려하여 기존 어음결제의 축소정책과 관련한 종이어음 대체 수단과의 상호 보완을 통해 기업 간 대표적인 전자결제수단으로서 자리매김 되었으면 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 및 방향은 전자어음 운영 및 발행된 기간이 짧아서 실물거래의 거래 자료가 없는 관계로 실증적인 분석을 토대로 논리전개를 하지 못했다는 것이 한계점이자 향후 연구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한다.

“본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I. 국내문헌

- 권중호. “전자어음제도의 도입과 법리적 과제”. 비교사법. 제10권 제1호(통권20호). 2003.
- 김준경. “어음의 경제적 기능과 제도개혁방안”. 한국개발연구원 1998. 12.
- 법제사법위원회. “어음법중개정법률안검토보고”. 1998. 12.
- _____.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 2002.
- 서헌제. “어음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상사법연구 제20권 제3호. 2001.
- _____. 『어음수표법(제2판)』. 법문사. 2000.
- 심종석. “국제상거래에서 전자문서 인증시스템에 관한 법적 고찰”. 경영법률 제14집 제2호. 한국경영법률학회. 2004.
- 정경영. “어음의 전자화에 따른 법적 문제점 고찰”. 비교사법 제10권 1호(통권20호). 2003.
- 정쾌영. “어음과 수표의 전자화에 관한 고찰”. 대한경영학회지 제16권 제7호. 2003. 12.
- 전자거래기본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전자서명법
-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조세특례제한법
-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제도”. (www.bok.or.kr).
- 한영희 · 심종석. “유가증권 전자화에 관한 고찰”. 한국경영교육학회. 춘계학술논문발표집. 2005년 4월.

II. 국외문헌

- Ann H. Spiotto, Electronic Bill Payment and Presentment : A Primer, *The Business Lawyer* Vol.57, November, 2001.
- Electronic Signature in Global and National Commerce Act(E-Sign).
- General Usage for International Digitally Ensured Commerce (GUIDEC).
- Guidelines for Cryptography Policy.
- Lee S. Adams & David J. Martz, Developments in Cyberbanking, *The Business Lawyer* Vol.57, November, 2001.
-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
- UNCITRAL Model Law on Electronic Commerce with Guide to Enactment.
- Greenwood, Daniel J.. Campbell, Ray A., “Electronic commerce legislation : from written on paper and sign in to electronic records and online authentication”, *Business Lawyer*, Vol.53, 1997. 1.
- Kawawa Noriko, “Contract Law Relating to Liability for Injury Caused by Information in Electronic Form”, *Journal of Information Law and Technology(JILT)*, Univ. of Warwick and Univ. of Strathclyde, 2000.
- Reed Chris, “What is a Signature?”, *Journal of Information Law and Technology (JILT)*, Univ. of Warwick and Univ. of Strathclyde, 2000. 10.

Savage Nigel, "The Legal Problems of Paper less Transaction", *Journal of Business Law*, Summer 1999.

Uniform Commercial Code(UCC).

Uniform Computer Information Transactions Act(UCITA).

Uniform Electronic Transactions Act (UETA).

Whitaker, David R., "Rules under the Uniform Electronic Transactions Act for an electronic equivalent to a negotiable promissory note", *Business Lawyer*, Vol.55, 1999. 1.

Wittie, Robert A., Winn, Jane K., "Electronic records and signatures under the federal E—Sign legislation and the UETA", *Business Lawyer*, Vol.56, 2000. 1.

A Study on the Method of Activation for the Electronic Promissory Note

— On Focusing for the System of Tax Incentives —

Han, Young-Hee*

—<Abstract>—

At the present time, Rapidly spreading instant use of electronic payment systems are facilitating changes and development in commercial transaction. This study defines not only data messages and electronic promissory note(hereinafter EPN) but also deals with legal effects and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 under electronic promissory note act(2005) which is became effective act in Korea.

This study is to theoretically contemplate the promissory note system and to examine the need and legal conditions of the EPN as an alternative of the paper note. Furthermore, it is to suggest some proposals about tax incentives that the range of tax relief in Regulation of Tax Reduction and Exemption Act should extend to include EPN. It will ultimately help to activate the development of the electronic promissory note system.

<Key words> Electronic Promissory Note(EPN), Electronic Promissory Note Act(2005), tax incentives

* Assistant Professor, Dept. of Tax and affair of Nam-Seoul University.